

# 특정 질환 의료 급부 사업 신청 하시는 분에게의 통지

2010 년도 세금 제도 개정에 의한 연소자 부양 공제 폐지, 16~18 세까지의 특정 부양 공제 추가 부분 폐지의 영향을 받는 분께 알려드립니다.

• 특정 질환 의료 급부 사업에서는 환자 일부 자기 부담 한도액을 소득세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 세금 제도 개정에 의해 환자 일부 자기 부담 한도액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• 아이치현에서는 그 영향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이하의 서류를 제출 받아 세금 제도 개정 전의 구 소득세액을 예상 계산하여 환자 일부 자기 부담 한도액을 산정합니다.

## 【추가 제출 서류】

- 신규 신청, 전입 신고를 신청하시는 분... 세대조서 (양식 13)  
※양식은 보건소에 있습니다.

생계 중심자의 소득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분 ... 확정 신고서의 사본 (제 1 표 및 제 2 표)  
※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- 원천 징수표를 제출하시는 분 ...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
※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